

# 「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7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7월 18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7월 18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보건사업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편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을 이행하고자 과태료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금연구역 지정 근거 및 신설(안 제5조)
-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 기준·방법 추가(안 제7조)
- 금연사업 등 공헌한 군민, 단체 포상 지급 관련 신설(안 제9조)
- 과태료 인상 및 징수절차 안내 개정(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남섭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게 부과하는 타 시·군과의 과태료 편차를 해소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, 금연구역의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#### ○ 주요내용은

안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

“평창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”를 “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”로 확대하고, 같은 항 제5호에는 “가스충전소 및 주유소”를 신설하였으며,

안 제10조제1항의

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

“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”로

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#### ○ 검토결과

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

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

타 시·군과의 과태료 편차를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의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3.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
5.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(이하 “흡연구역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,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시의 설치 기준·방법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른다.

제9조제3항 중 “표창할 수 있다”를 “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<u>학교보건법</u>」에 따른 <u>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</u></p> <p>3. <u>평창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<u>소유자 또는 관리자</u></p>	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제1항에 따른 <u>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</u></p> <p>3. <u>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가스충전소 및 주유소</u></p> <p>6. (<u>종전 제5호와 같음</u>)</p> <p>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① ---- ----- ----- <u>소유자·점유자</u> -----</p>

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--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(이하 “흡연구역”이라 한다)을 설치---. 이 경우,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시의 설치 기준·방법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른다.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

①·② (생략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,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.

③ -----  
-----  
-- 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과태료) ① 군수는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제10조(과태료) ① -----  
-----  
----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